

# ORIGIN CASE

Vol. 4



- Case 1 차량용 LED 램프 (제8512.20호)
- Case 2 코코넛 밀크 (제2106.90호)
- Case 3 냉동 구운 장어
- Case 4 인스턴트 누들
- Case 5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8413.70호)
- Case 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제7223.00호)
- Case 7 철강 코일 (제7212.40호)
- Case 8 흑마늘 시즈닝 (제2005.99호)
- Case 9 Pipe-in-Pipe 어셈블리 (제7306.90호)
- Case 10 김치 소스 (제2103.90호)



한국원산지정보원



# CONTENTS

Case 1.	차량용 LED 램프 (제8512.20호)	1
Case 2.	코코넛 밀크 (제2106.90호)	7
Case 3.	냉동 구운 장어	12
Case 4.	인스턴트 누들	16
Case 5.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8413.70호)	20
Case 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제7223.00호)	26
Case 7.	철강 코일 (제7212.40호)	31
Case 8.	흑마늘 시즈닝 (제2005.99호)	36
Case 9.	Pipe-in-Pipe 어셈블리 (제7306.90호)	41
Case 10.	김치 소스 (제2103.90호)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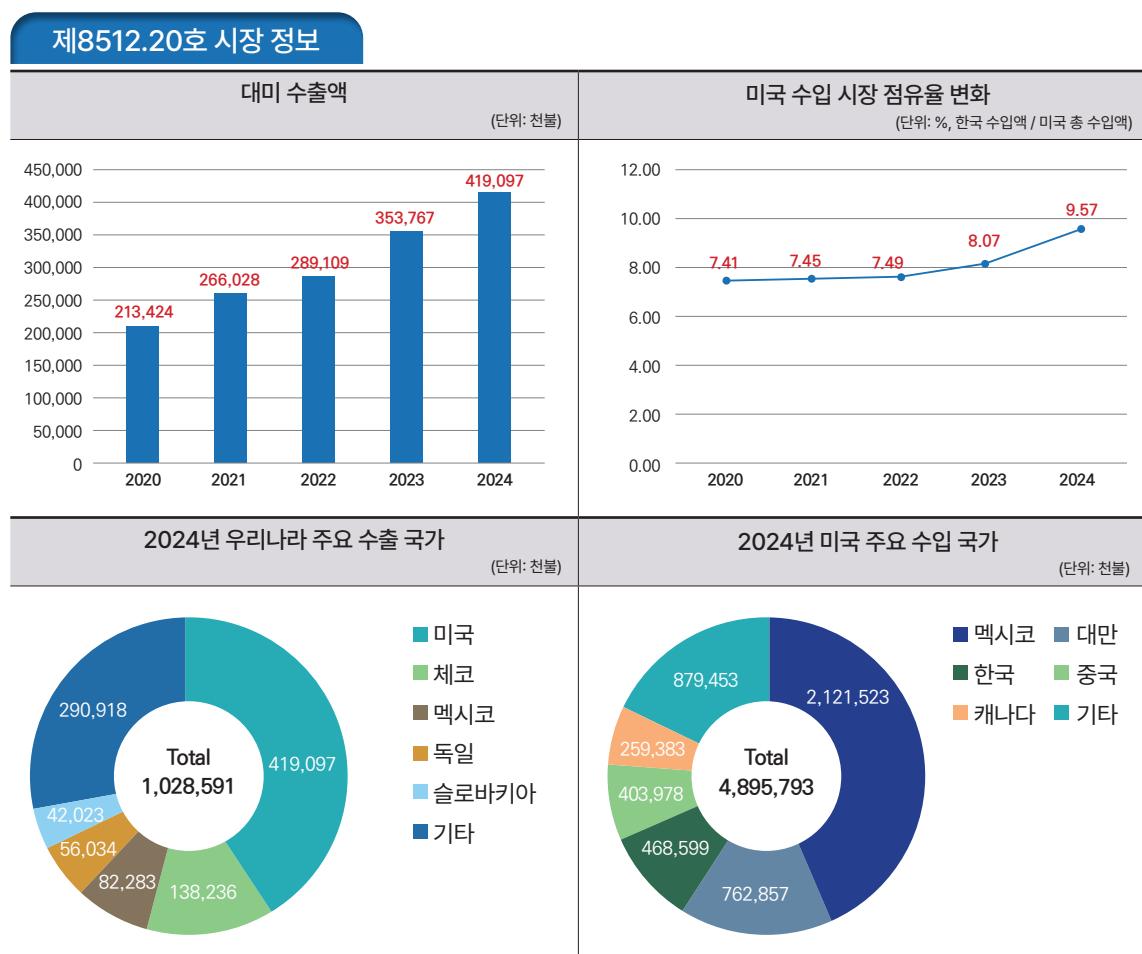
## 차량용 LED 램프

## 요약

사례명	차량용 LED 램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04910 (2020.04.21.)
사실관계	일본 또는 미국산 LED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SMT 또는 웨이브 솔더링 공정을 통해 PCBA를 생산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나사 및 커넥터 부착 등을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들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하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회로기판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정</li><li>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나사 체결, 커넥터 연결, 일부 납땜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정의 복잡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아님)</li></ul>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512.2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2.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차량용 LED 램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04910 (2020.04.21.)

#### 사실관계

요청자 Grakon LLC (대리인: Heather Jacobson)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용 LED 램프 (부품번호 2082-003, 4289-001, 2000-007)</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D (일본 또는 미국산)</li> <li>PCBA (멕시코산)</li> <li>플라스틱 사출 성형물 및 기타 부품 (중국 및 기타 국가산)</li> </u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용 LED 램프</li> </ul>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512.20.20</li> </ul>

#### 제조공정



- 상세공정
- 일본 또는 미국산 LED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PCBA 제조
    - SMT 또는 웨이브 솔더링 공정 수행
  - 중국으로 수출
  - 중국에서 나사 및 커넥터 부착, 납땜 등의 공정 수행
  - 검사 및 포장
  -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핵심 판단 요소: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복잡성과 기술 수준, 부품이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능하는지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어 완성품이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 발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며, 이 때,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 해당 가공이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 내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대만에서 제조된 다양한 정비공구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 내에서 열처리, 도금, 최종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제품 정비공구 생산

**판정** 각 물품이 수입 당시와 완제품이 된 후에도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였고, 이미 대만에서 열간단조 또는 냉간성형을 통해 최종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도 않았으며, 각 부품은 이미 수입 시점에 정비용 수공구로 조립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므로 용도의 변화 역시 없다고 판결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자재로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정**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착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 관련 법령 및 분석

- CBP는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광원(light source)의 원산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17620*

**사례** 다양한 수입 부품(개별 부품 및 하위 조립체)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산 LED와 결합해 렌즈 헤드 하위 조립체 및 손전등 완제품으로 제조함

**판정** 미국산 LED가 손전등의 주요 광원을 생성함으로써 렌즈 헤드 하위조립체 및 손전등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한다고 언급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15657*

- 한편, CBP는 다수의 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A)에 제조·조립하는 공정이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를 요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 참고: *Customs Service Decision(C.S.D.) 85-25, "Customs Bulletin" 제19호 844쪽(1985)*

**사례** 저항기, 다이오드, 직접회로, 소켓 등 50개 이상의 개별 가공 부품들이 하나의 PCB에 조립됨

**판정** CBP는 이 PCBA 조립 과정이 매우 많은 수의 부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작업 공정이 포함되며,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가 필요하고, 세심한 주의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참고판정: *CBP Ruling HQ H114395*

**사례**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으로 광엔진(light engine)과 PCBA 메인보드를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디지털 광학 프로젝터 생산

**판정** CBP는 광엔진과 PCBA 메인보드가 프로젝터의 본질적 요소이며, 이들이 생산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을 PCB에 조립하는 것으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complex and meaningful)으로 보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PCBA가 조립된 국가를 제품의 원산지로 간주함

- 이 경우, LED 또한 PCBA에 조립되는 개별 부품 중 하나이므로,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조립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봄

## 판정 결과

- ▣ 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들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하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회로기판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단
- ▣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나사 체결, 커넥터 연결, 일부 납땜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정의 복잡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

## 결론

- ✓ 멕시코에서 수행된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기반의 PCBA 조립은 높은 복잡성과 기능적 통합성을 수반하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됨
- ✓ 이에 따라 최종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되며, 중국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시사점

- 광원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광원이 생산된 곳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이때, 광원을 만들기 위해 인쇄회로기판이 제작되고, 이를 위해 SMT, 웨이브 솔더링과 같은 공정이 수행된다면 이러한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만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있는 공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4910 (2020.04.21.), <https://rulings.cbp.gov/ruling/H304910>
- CBP Ruling HQ H017620 (2008.02.05.), <https://rulings.cbp.gov/ruling/H017620>
- CBP Ruling HQ H215657 (2013.04.29.), <https://rulings.cbp.gov/ruling/H215657>
- CBP Ruling HQ H114395 (2011.05.18.), <https://rulings.cbp.gov/ruling/H114395>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2

코코넛 밀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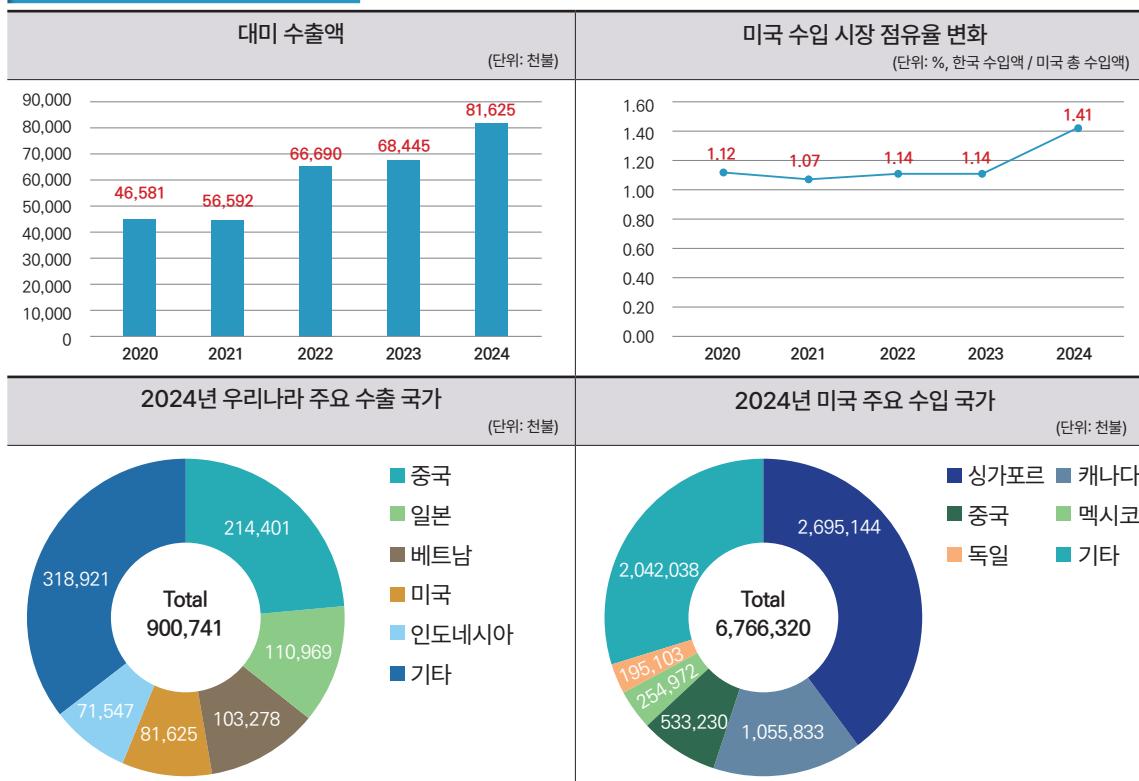
사례명	코코넛 밀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2079 (2020.06.05.)
사실관계	코코넛 밀크 원액, 구아검, 물 등 원재료를 모두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하여 최종 제품인 코코넛 밀크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 『19 C.F.R. § 134』에 따라, 일국에서 모든 재료가 조달되어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아닌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가 원산지이므로 코코넛 밀크의 원산지는 스리랑카임</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li><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ul>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210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30%
	미국 기본세율
	0~10% or 종량세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p>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p> <p>4. 제2106.90호의 당시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8.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 제2106.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코코넛 밀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2079 (2020.06.05.)

#### 사실관계

요청자 Brad's Organic, LLC (대리인: Joint Agri Products Ceylon (Pvt) Ltd)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코넛 밀크 제품 (지방함량 11% 및 18% 두 종류)</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코넛 밀크 원액 49%</li> <li>물 49%</li> <li>구아검(guar gum) 2%</li> </u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원재료용</li> </ul>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06.90.9890</li> </ul>

#### 제조공정



01

스리랑카 내에서  
원재료 조달



02

스리랑카 내에서  
가공 및 제조



03

소매용 포장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원재료 모두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

2. 스리랑카 내에서 가공 및 제조

3. 소매용 용기에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함
  - CBP 『19 C.F.R. § 134』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 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2, 681 F. 2d 778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판정 결과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외국산 물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자국산 재료만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그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되므로, 완제품 코코넛 밀크 제품의 원산지는 스리랑카임

##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 모든 재료가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되어 생산되었으므로 원산지는 스리랑카임

 **I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은 2개국 이상의 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에 적용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2079 (2020.06.05.), <https://rulings.cbp.gov/ruling/N312079>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 냉동 구운 장어

### 요약

사례명	냉동 구운 장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1331 (2020.12.16.)
사실관계	미국 또는 유럽산 생물 장어 치어를 중국으로 수입하여 양식한 후, 등뼈를 따라 중앙을 절개하고 머리, 뼈, 내장, 지느러미 제거(껍질은 유지), 세척, 굽기, 찜, 냉동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냉동 구운 장어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에서의 가공을 통해 뼈와 골격 구조가 제거되었고 더 이상 물고기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며, 가공을 통해 원통형 구조를 지닌 장어가 납작하게 펼쳐진 생선 살의 형태가 되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sup>1)</sup>

### 사례명 [냉동 구운 장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1331 (2020.12.16.)

#### 사실관계

요청자 American Eel Depot, Corp. (대리인: Grunfeld, Desiderio, Lebowitz, Silverman & Klestadt, LLP)

제품명 냉동 구운 장어 (Frozen Roasted/Broiled Eel)

제품  
구성

- 미국산 장어 치어[American eel(Anguilla rostrata)]
- 유럽산 장어 치어[European eel(Anguilla anguilla)]

#### 제조공정



01  
장어 치어  
중국으로 수입



02  
양식



03  
냉동 구운  
장어로 가공



04  
미국 수출

#### 상세공정

- 미국 또는 유럽산 생물 장어 치어를 중국으로 수입
- 중국에서 양식
- 상업용 크기까지 양식한 후, 아래 공정 수행
  - 등뼈를 따라 중앙을 절개하고 머리, 뼈, 내장, 지느러미 제거(껍질은 유지)
  - 껍질과 살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세척 후 구움
  - 증기로 찜 처리
  - 소스를 더해 한 번 더 직화로 구움
  - 검사, 등급 분류, 포장 후 냉동하여 미국 수출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례: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701 F.Supp. 229, 235 (C.I.T. 1988)

**사례** 뉴질랜드산 생선(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상태)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해동, 껍질 제거, 뼈 제거, 다듬기, 재냉동 및 포장하는 공정을 거침

**판결** 해당 생선이 한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필레 형태로 가공되었으며, 가공된 이후 더 이상 생선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필레 자체가 원래의 생선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상업용 제품이 되었다고 판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R04129 (2006)*

**사례** 미국산 메기 치어(catfish fingerlings)가 중국에서 양식, 사육, 수확, 내장 제거, 껍질 제거, 냉동 및 포장되었으나 필레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판정** CBP는 껍질 제거 및 절단과 같은 공정은 기본적인 수준의 가공에 해당하며, 여전히 '통메기 (whole catfish)'라는 상업적 성질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을 불인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R04074 (2006)*

**사례** 미국산 메기 치어(catfish fingerlings)가 중국에서 양식, 사육, 수확, 내장 제거, 껍질 제거, 냉동, 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레 작업까지 수행됨

**판정** 중국에서 이루어진 필레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7962 (2019)*

**사례** 장어는 중국에서 양식되고, 머리 제거, 지느러미 정리, 필레 작업까지 수행된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어 구이 및 소스 처리 과정을 거쳐 냉동 구운 장어로 가공

**판정** 필레 작업을 통해 장어는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되므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판정 결과

- 청구인은 필레 가공된 생선이란 '등뼈에 평행하게 절단되어 잘라낸 불규칙한 크기와 형태의 생선 살 조각으로 전체 생선과 닮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등뼈를 따라 절단되었을 뿐 막에 의해 전체 장어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CBP는 필레 방식과 본 사안의 방식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함

본 사안의 장어



필레 가공된 장어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경우 모두 뼈나 골격 구조는 제거되어 있고 더 이상 물고기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을 통해 원통형 구조를 지닌 장어는 납작하게 펼쳐진 생선 살의 형태가 되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 결론

- ✓ 중국에서 수행된 중앙 절개, 뼈 제거, 굽기 등의 복합 가공 공정은 장어의 성질, 형태, 상업적 정체성을 변경함
- ✓ 따라서 미국산 또는 유럽산 장어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II 시사점

- 가공된 어류의 실질적 변형 판단은 최종 제품이 어류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음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1331 (2020.12.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331>
- CBP Ruling NY R04129 (2006.06.15), <https://rulings.cbp.gov/ruling/R04129>
- CBP Ruling NY R04074 (2006.06.13), <https://rulings.cbp.gov/ruling/R04074>
- CBP Ruling NY N307962 (2020.12.16.), <https://rulings.cbp.gov/ruling/N307962>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erica+v.+United+States>

case  
4

인스턴트 누들

요약

사례명	인스턴트 누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5290 (2021.02.08.)
사실관계	태국에서 제조된 면, 중국에서 제조된 동결건조 채소, 일본에서 제조된 수프 농축액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단순 키트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인스턴트 누들 제품은 베트남에서 단순히 포장되었을 뿐, 그 구성 성분들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각 구성 성분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원래의 국가를 원산지로 유지해야 함</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li><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ul>

## I 판정사례<sup>2)</sup>

### 사례명 [인스턴트 누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5290 (2021.02.08.)

#### 사실관계

요청자 Noodie Goods (대리인: Noodie Foods)

제품명 • 인스턴트 누들 제품

제품 • 면 (태국산)

구성 • 동결건조 채소 (중국산)  
• 수프 농축액 (일본산)

#### 제조공정



01

면, 동결건조 채소, 수프  
농축액을 베트남으로 수입



02

단순 포장



03

미국 수출

#### 상세공정

##### 태국 제조공정

- 원재료 혼합 및 반죽
- 절단 후 찜
- 건조
- 포장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 중국 제조공정

- 중국에서 채소 재배
- 절단 후 찜
- 동결 건조
- 포장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 일본 제조공정

- 여러 원재료를 끓여서 수프 농축액 제조
- 포장하여 베트남 수출

##### 베트남 최종공정

- 세 구성품을 수입하여 하나의 박스에 단순 포장 (추가 가공 없음)
- 미국으로 수출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1 (1992)*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United States, 3 C.I.T. 220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정을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200617 (2012)*

- |    |  |
|----|--|
| 사례 | 루마니아산, 미국산 구성 성분을 수입하여 단순히 함께 포장 및 밀봉하여 디너 밀키트를 생산 |
| 판정 |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구성 성분의 원산지를 유지해야 함             |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54086 (2009)*

- |    |   |
|----|---|
| 사례 | 미국 또는 멕시코산 채소, 코스타리카산 파인애플 등을 단순히 함께 포장하여 볶음 요리 키트 생산 |
| 판정 |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구성 성분의 원산지를 유지해야 함                |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52803 (2009)*

- |    |   |
|----|---|
| 사례 | 여러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 및 수확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급속 냉동한 후 중국 또는 프랑스로 수출하여 동결건조하고 이후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 판정 | 동결건조 과일 및 채소는 해당 동결건조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래 재배된 국가의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정 |

## 판정 결과

- 인스턴트 누들 제품은 베트남에서 단순히 포장되었을 뿐, 그 구성 성분들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각 구성 성분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원래의 국가를 원산지로 유지해야 함
  - » **면:** 다양한 원재료가 태국에서 혼합, 반죽, 절단, 찜, 건조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인 면으로 재탄생했으므로 태국이 원산지임
  - » **수프 농축액:** 원재료들을 끓이는 공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명칭, 성질, 용도를 지닌 수프 농축액이 생산되었으므로 일본이 원산지임
  - » **동결건조 채소:** 동결건조 자체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으나, 채소가 처음 재배된 국가 역시 중국이므로 동결건조 채소의 원산지는 중국임

## 결론

- ✓ 베트남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품 전체를 베트남산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구성품별로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유지해야 함  
(면: 태국, 수프 농축액: 일본, 동결건조 채소: 중국)

## ② 시사점

- 밀키트,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단순히 구성 요소를 수입해서 포장만 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5290 (2021.02.08), <https://rulings.cbp.gov/ruling/H315290>
- CBP Ruling NY N200617 (2012.02.10), <https://rulings.cbp.gov/ruling/N200617>
- CBP Ruling NY N054086 (2009.03.26), <https://rulings.cbp.gov/ruling/N054086>
- CBP Ruling NY N052803 (2009.03.10), <https://rulings.cbp.gov/ruling/N052803>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5

##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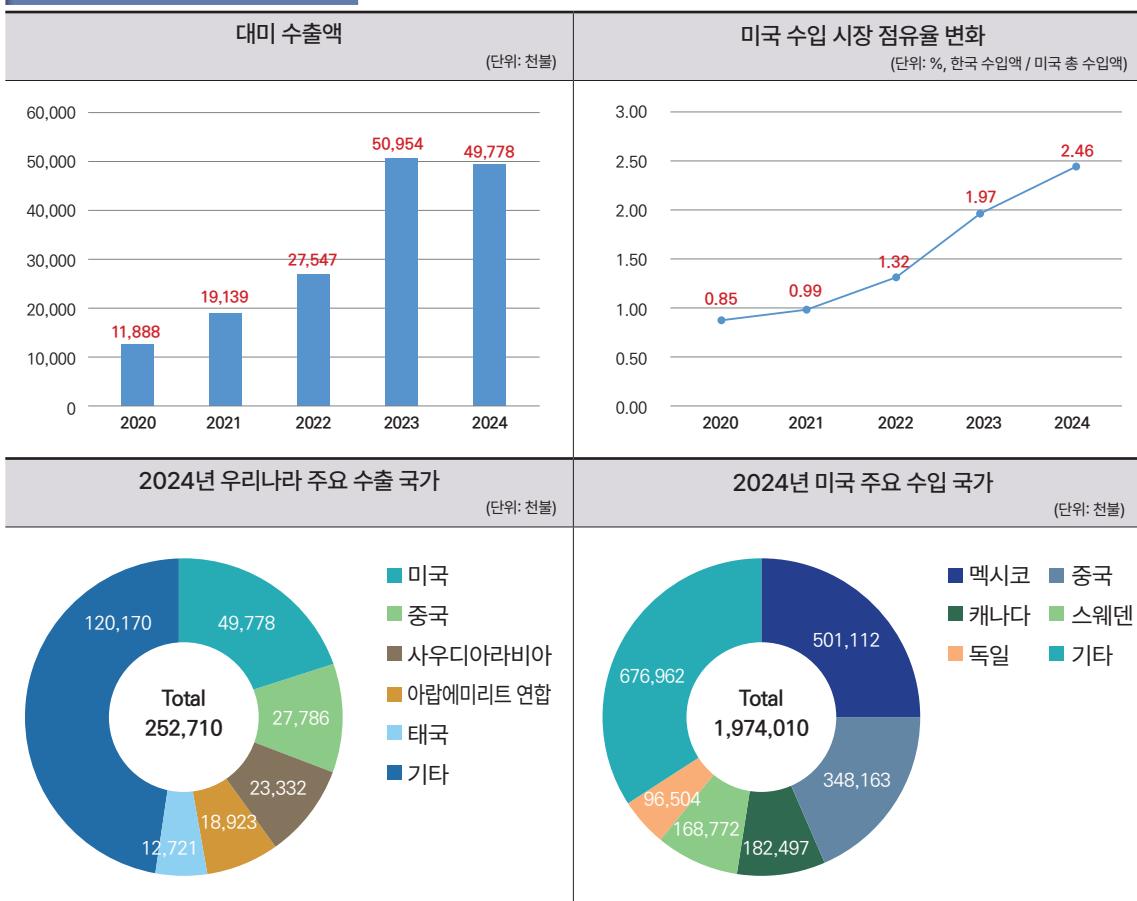
사례명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13371 (2021.03.30.)
사실관계	중국, 멕시코 혹은 한국을 최종 제조국으로 가정한 4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가공해 생산한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되는 국가에 따라 결정됨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8413.7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13.7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13371 (2021.03.30.)

#### 사실관계

요청자 LG Electronics, Inc.

제품	제품명	•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구성	•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으로 구성
	용도	• 전기차 모터에 사용
	완제품 HTSUS	• 8413.70.20

#### 제조공정



여러 부품을 중국,  
멕시코 또는 한국으로 수입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생산

미국 수출

상세공정 • 네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생산

#### 시나리오 1

제조국	제품	부품		
		부품	원산지	원재료 비용 비율
중국	로터	샤프트	멕시코	22.3%
		자석	중국	22.6%
		링(끝부분)	중국	1.3%
		가이드 링	중국	0.2%
		로터용 리졸버	중국	0.4%
		로터 코어	중국	15.3%
	스테이터	스테이터 코어	중국	15.3%
		자석 와이어	중국	15.0%
		절연 필름	중국	2.6%
		커넥터 링	중국	2.9%
		파우더, 바니시	중국	2.1%

## 시나리오 2

제품		부품		
제조국	제품	부품	원산지	원재료 비용 비율
멕시코	로터	샤프트	멕시코	22.3%
		자석	중국	22.6%
		링(끝부분)	중국	1.3%
		가이드 링	멕시코	0.2%
		로터용 리졸버	일본	0.4%
		로터 코어	한국	15.3%
	스테이터	스테이터 코어	한국	15.3%
		자석 와이어	중국	15.0%
		절연 필름	중국	2.6%
		커넥터 링	멕시코	2.9%
		파우더, 바니시	미국	2.1%

## 시나리오 3

제품		부품		
제조국	제품	부품	원산지	원재료 비용 비율
멕시코	로터	샤프트	멕시코	22.3%
		자석	중국	22.6%
		링(끝부분)	중국	1.3%
		가이드 링	중국	0.2%
		로터용 리졸버	중국	0.4%
		로터 코어	중국	15.3%
	스테이터	스테이터 코어	중국	15.3%
		자석 와이어	중국	15.0%
		절연 필름	중국	2.6%
		커넥터 링	중국	2.9%
		파우더, 바니시	중국	2.1%

## 시나리오 4

제품		부품		
제조국	제품	부품	원산지	원재료 비용 비율
한국	로터	샤프트	멕시코	22.3%
		자석	중국	22.6%
		링(끝부분)	중국	1.3%
		가이드 링	중국	0.2%
		로터용 리졸버	일본	0.4%
		로터 코어	한국	15.3%
	스테이터	스테이터 코어	한국	15.3%
		자석 와이어	중국	15.0%
		절연 필름	중국	2.6%
		커넥터 링	중국	2.9%
		파우더, 바니시	중국	2.1%

##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 USTR은『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때의 핵심 기준은 수행된 작업의 정도와 해당 부품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 시키지 않으며, 이때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①작업의 성격(조립되는 부품의 수 포함), ②작업 단계의 다양성, ③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④숙련된 기술, ⑤작업의 디테일, ⑥품질 관리 등이 있음

❖ 참고 판례: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판례 및 CBP 기준 판정 사례를 인용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정**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827, NY N316151, NY N305251*

## 판정 결과

- ▣ 사례에서 최종 물품 생산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주요 부품들이 사용되기는 하나,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은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로 판단됨
-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조립 과정 자체는 단순히 부품을 삽입하고 부착하는 것 이상의 작업이라고 판단되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되는 국가에 따라 결정됨

## 결론

- ✓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주요 부품으로 판단되는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며, 중국산으로 판정되는 경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 이에 따라, 시나리오 1, 3의 원산지는 중국, 2, 4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시나리오 1, 3의 경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③ 시사점

- CBP는 모터와 같은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주요 부품인 스테이터와 로터가 생산된 국가를 기준으로 하며, 나아가 스테이터와 로터의 원산지 또한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④ 참고자료

- BP Ruling HQ H313371 (2021.03.30.), <https://rulings.cbp.gov/ruling/H313371>
- CBP Ruling NY N308827 (2020.01.31), <https://rulings.cbp.gov/ruling/N308827>
- CBP Ruling NY N316151 (2020.12.18), <https://rulings.cbp.gov/ruling/N316151>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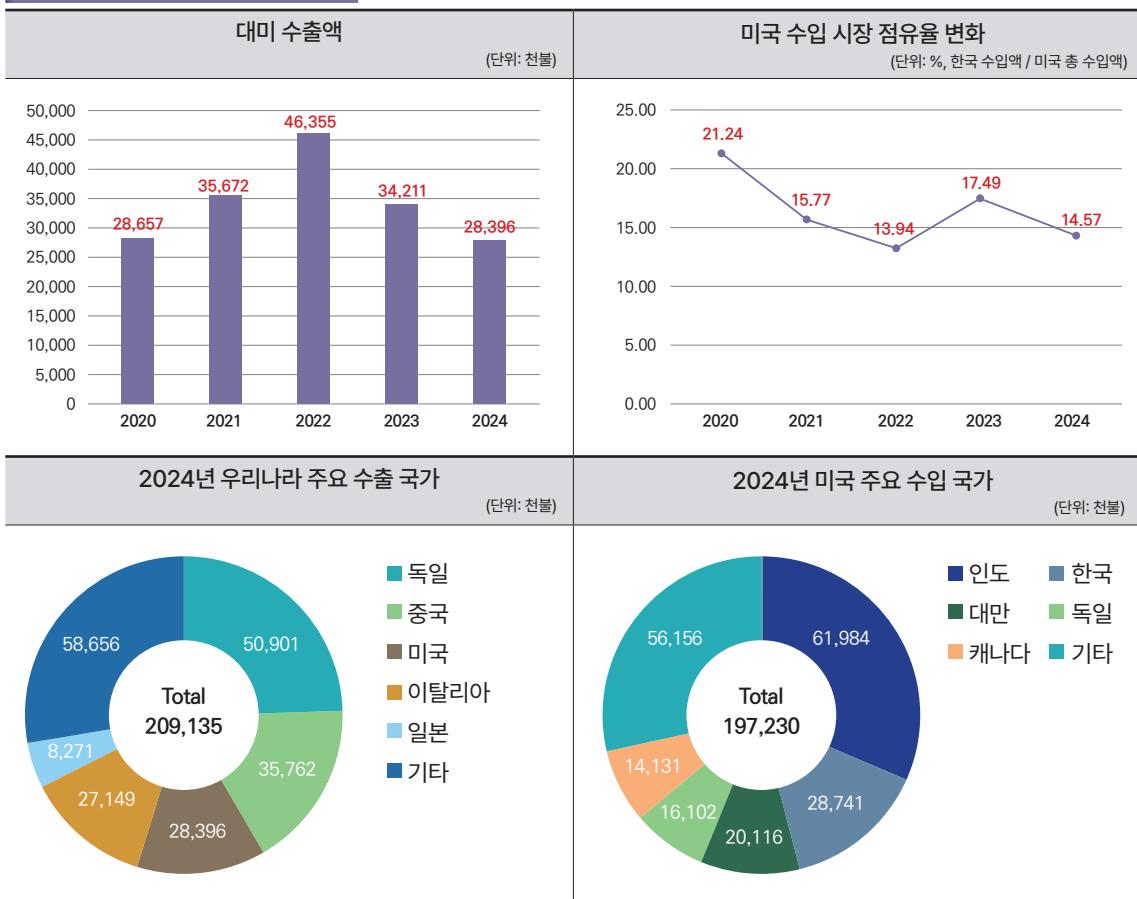
사례명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677 (2021.08.25)
사실관계	한국, 대만 또는 인도산 와이어 로드(5.5mm 또는 7.5mm)를 호주로 수입하여 세척, 건조, 신장, 냉간 인발, 어닐링 등의 공정을 통해 1.8~5.4mm 스테인리스강 와이어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신청자는 어닐링 공정이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주장(연성 증가, 경도 완화)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행해진 어닐링 공정은 와이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하거나 뛰어난 특성을 부여하지도 않고 특정 용도로 직접 사용될 준비가 된 제품으로 만들지도 않으며, 이러한 공정에 대한 처리 시간, 비용, 부가가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7223.0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223.0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677 (2021.08.25.)

#### 사실관계

요청자 Aqseptence Group, Inc.

제품명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구성	• Grade 304 또는 31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로드(한국, 대만, 인도산)
제품 용도	• 여과, 분리 및 수처리 기술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
원재료 HS Code	• 7223.00.1061 또는 7223.00.1076
완제품 HS Code	• 7223.00.1061 또는 7223.00.1076

#### 제조공정



#### 상세공정

- 직경 5.5 또는 7.5mm의 와이어 로드를 한국, 대만 또는 인도에서 호주로 수입
- 세척(Cleaning)
- 건조(Drying)
- 신장(Stretching)
- 냉간 인발(Cold-drawing)
- 어닐링(Annealing)
- 재권취(re-spooling)
- 완제품(직경 1.8288~5.4888mm에 해당하는 각 다른 사이즈의 6개 종류)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의 요건: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가공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물품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단순한 와이어 드로잉(Drawing) 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참고 판례: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IT 1987), aff'd, 867 F.2d 1409 (Fed. Cir. 1989)

**사례** 스페인산 와이어 로드(코일 형태)가 캐나다로 선적된 후 드로잉(Drawing) 공정을 거쳐 와이어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입

**판결** 와이어 로드가 와이어를 제조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거의 없으며, 이미 와이어 로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구성이 변화하여 최종 제품의 성질 및 용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Ferrostaal 판결에서 법원은 냉간압연 강판에 대한 '용융 아연 도금(hot-dip galvanizing)'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공정은 압연 과정에서 딱딱해진 강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어닐링 공정과, 이를 녹은 아연에 담가 표면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성질을 부여하는 도금 공정의 두 단계를 포함
-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어닐링이나 도금 단독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 CBP는 어닐링이 복잡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으며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어닐링은 일반적으로 와이어 신장 공정 이후 수행되어 단독으로는 제한된 용도의 고유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
- CBP는 어닐링을 통한 실질적 변형 판단은 열처리의 범위(가공 시간, 비용, 복잡성 등), 해당 처리로 인한 부가가치, 강재의 기계적 특성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

## 판정 결과

- ☞ 신청자는 어닐링 공정이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주장(연성 증가, 경도 완화)하였으나, 이는 와이어의 본질적인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판정
- 해당 공정은 와이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고유하거나 뛰어난 특성을 부여하거나 특정 용도로

## 관련 법령 및 분석

직접 사용될 준비가 된 제품으로 만들지도 않으며, 이러한 공정에 대한 처리 시간, 비용, 부가가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기타 의견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되며, 해당 제품(HTSUS 7223.00.1061, 7223.00.1076)은 해당 포고령에 따라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시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호주에서의 세척, 신장, 어닐링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인 한국, 대만 또는 인도임
- ✓ 완제품은 제232조 철강 제재 품목에 해당하여,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II 시사점

- 어닐링 공정으로 인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경우, 열처리의 범위, 생성된 부가가치, 강재의 기계적 특성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0677 (2021.08.25.), <https://rulings.cbp.gov/ruling/N32067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Superior Wire v. The United States, William Von Raab, Commissioner of Customs, and District Director of Customs at Port of Detroit, Michigan (1989),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518523/superior-wire-v-the-united-states-william-von-raab-commissioner-of/?q=Superior+Wire+v.+United+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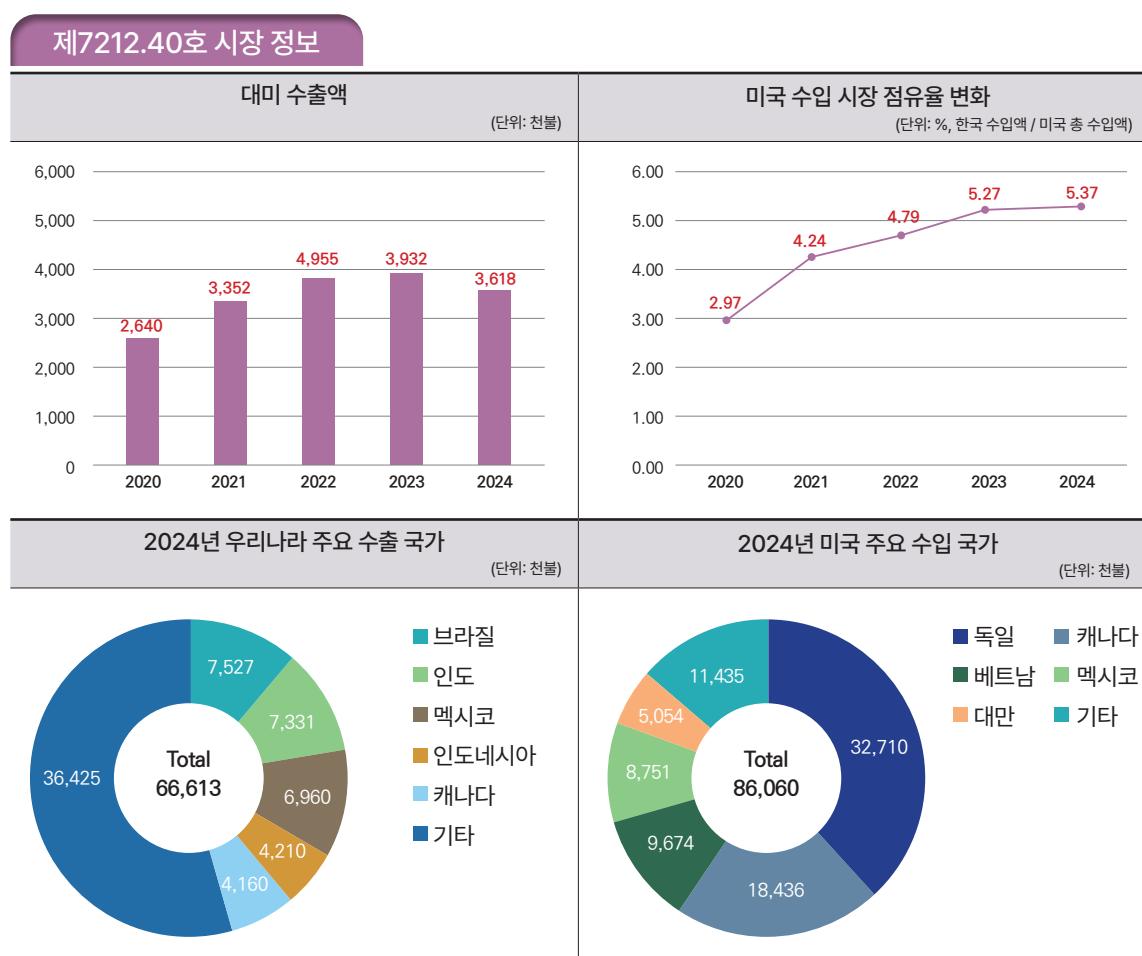
## 철강 코일

## 요약

사례명	철강 코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4853 (2022.04.07.)
사실관계	프랑스에서 용융 아연도금, 프라이머 도포 및 폴리에스터 코팅 처리된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을 네덜란드로 보내 절단, 천공, 재권취 후 캐나다로 수출하고 캐나다에서는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해당 물품은 프랑스에서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에서 출발하였고, 네덜란드에서의 추가 가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판압연 제품으로 남아있으므로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절단 및 천공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 철강 코일의 원산지는 프랑스임</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212.4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철강 코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4853 (2022.04.07.)

#### 사실관계

요청자 Meteor Horticulture Systems Inc. (대리인: Pacific Customs Brokers Inc.)

제품	제품명	• 철강 코일
	구성	• 용융 아연도금, 프라이머 도포 및 폴리에스터 코팅 처리한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 (프랑스산, 폭 1,120mm~2,000m, 두께 0.6mm)
	용도	• 온실 배수 시스템(gutter systems) 제조용
	완제품 HTSUS	• 7212.40.5000

#### 제조공정



#### 상세공정

##### 네덜란드

1. 프랑스산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 수입
2. 언코일(uncoiling)
3. 폭 312mm 또는 375mm 슬레이트 형태 절단
4. 일정 간격으로 두 개의 구멍을 타공 또는 천공
5. 다시 코일 형태로 감기(recoiling)
6. 캐나다로 수출

##### 캐나다

1. 네덜란드에서 가공된 코일을 수입하여 가공 없이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의 요건: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가공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물품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판정 결과

☞ 해당 물품은 프랑스에서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에서 출발하였고, 네덜란드에서의 추가 가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판압연 제품으로 남아있으므로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절단 및 천공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 철강 코일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 기타 의견

☞ 요청자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을 근거로 『19 C.F.R. § 102』에 따른 원산지판정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코일은 캐나다에서 단순히 반입 및 반출만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USMCA 국가의 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어 해당 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음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되며, 해당 제품(HTSUS 7212.40.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와 함께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네덜란드에서의 공정(절단, 편침)은 단순 가공으로, 원재료의 정체성 및 사용 목적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프랑스로 간주

## ③ 시사점

- 철강 제품의 경우, 단순 절단, 편침과 같은 가공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4853 (2022.04.07.), <https://rulings.cbp.gov/ruling/N32485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8

## 흑마늘 시즈닝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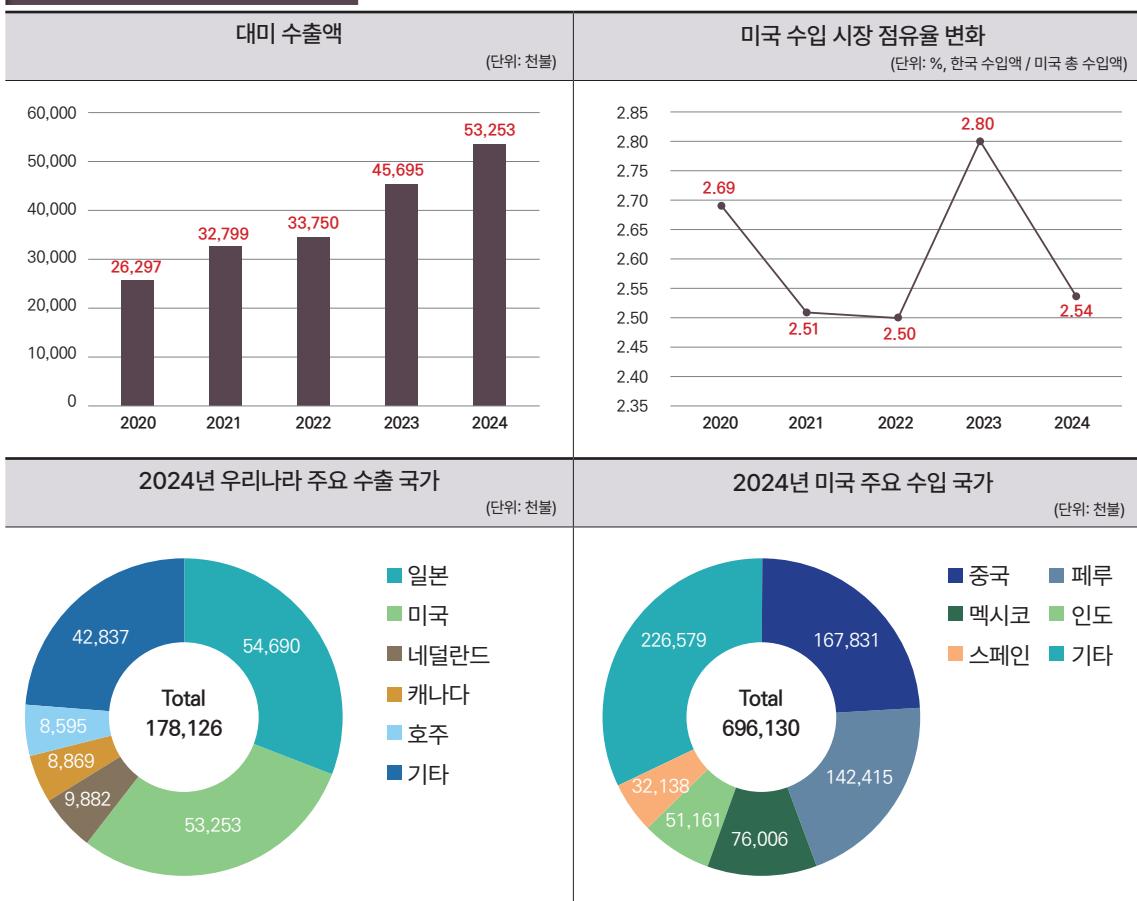
사례명	흑마늘 시즈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6044 (2022.06.08.)
사실관계	스페인산 생마늘(껍질 포함)을 남아프리카로 수입하여 발효, 로스팅, 냉장, 혼합, 분쇄, 체질 등의 공정을 거쳐 흑마늘 시즈닝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남아프리카에서 수행된 공정은 원재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최종 제품 역시 여전히 '흑마늘'로 간주되므로 성분, 명칭, 용도 측면에서의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2005.9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20%
	미국 기본세율	0~14.9% or 0.8¢/kg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제2005.9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흑마늘 시즈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6044 (2022.06.08.)

#### 사실관계

요청자 Cape Herb & Spice

제품	제품명	• 흑마늘 시즈닝
	구성	• 건조 분쇄 흑마늘 (약 98%) • 쌀겨 (약 2%)
	용도	• 식료품점 소매 판매용
	용도	• 2005.99.9700

####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스페인산 생마늘(껍질 포함)을 남아프리카로 수입

- 온도 60~70°C의 발효기에서 14일간 발효
- 발효 후, 실온에서 1일간 냉각
- 70~80°C 열 교환 오븐에서 1~2일간 추가 로스팅(가열)
- 껍질 제거 후 0~10°C에서 1~2일간 냉장 보관
- 쌀겨를 혼합 후 분쇄, 체질
- 유리병에 소매 포장
-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K81363 (2003)*

**사례**    중국,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마늘을 콜롬비아에서 마늘 쪽으로 분리한 후 껍질을 제거하고 소매용으로 포장 가공

**판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CBP는 커피 제조를 위한 로스팅(roasting)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로스팅 및 이와 유사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08056 (2007)*

**사례**    껍질을 제거한 캐슈넛을 볶은 뒤 통조림 처리

**판결**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G89921 (2001)*

**사례**    건조된 콩과 병아리콩을 재수화, 통조림 처리, 180°F의 뜨거운 소금물에 담금, 밀봉, 260°F의 회전식 조리기에서 15분 이상 조리, 냉각, 라벨링, 포장함

**판결**    실질적 변형 불인정

## 판정 결과

- ▣ 남아프리카에서 수행된 공정은 원재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최종 제품 역시 여전히 '흑미늘'로 간주되므로 성분, 명칭, 용도 측면에서의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 결론

- ✓ 스페인산 생마늘이 남아프리카에서 일부 가공되었으나,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스페인으로 판정됨

### ③ 시사점

- 발효, 냉각, 로스팅, 혼합, 분쇄 등의 공정은 식품 특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원재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https://rulings.cbp.gov/ruling/N326044>
- CBP Ruling NY K81363 (2003.11.28), <https://rulings.cbp.gov/ruling/K81363>
- CBP Ruling NY N008056 (2007.03.16), <https://rulings.cbp.gov/ruling/N008056>
- CBP Ruling NY G89921 (2001.06.12), <https://rulings.cbp.gov/ruling/G8992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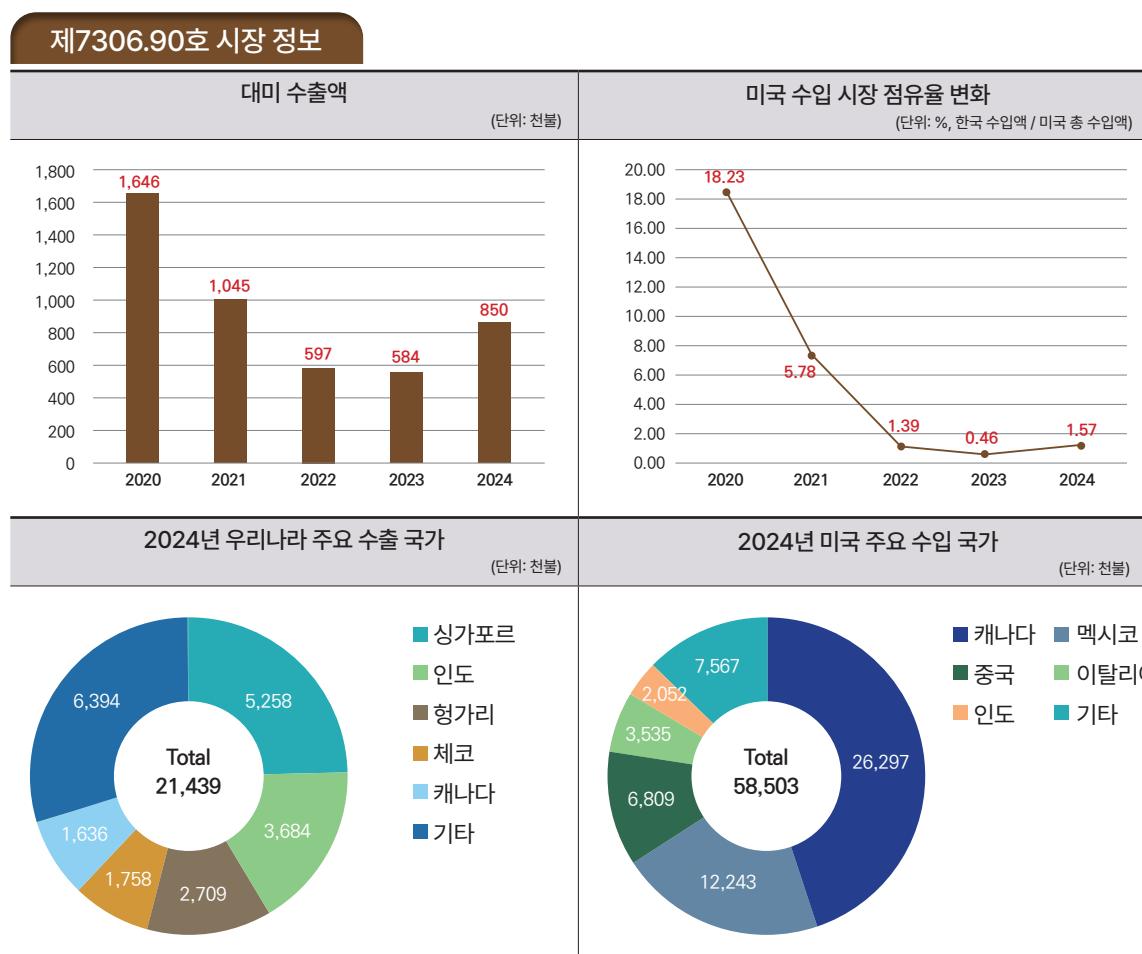
## Pipe-in-Pipe(PIP) 어셈블리

### 요약

사례명	Pipe-in-Pipe(PIP)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8989 (2022.10.28.)
사실관계	이탈리아 또는 독일산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와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패널, 스테인리스강 시트, 보호캡 등을 프랑스에서 가공하여 PIP 어셈블리를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프랑스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은 새로운 용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며, 어셈블리의 본질적인 특성은 중량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탈리아산 외부 파이프에 기인하므로 PIP 어셈블리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30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외경이 19밀리미터 미만인 제7304.41호의 것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Pipe-in-Pipe(PIP)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8989 (2022.10.28.)

#### 사실관계

요청자 Venture Global LNG, Inc.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NG 액화플랜트용 이중관(Pipe-in-Pipe, PIP) 조립체 3종</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NG 저장 탱크에서 로딩 암까지 LNG를 이송하는 세 개의 파이프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메인라인:</b> 직경 914.44mm의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 직경 1066.8mm의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li> <li><b>오프로딩라인:</b> 직경 609.9mm의 ASME B31.3 규격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 직경 762mm의 ASTM A358 규격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li> <li><b>순환라인:</b> 직경 168.27mm의 ASME B31.3 규격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 직경 323.9mm의 ASTM A358 규격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li> </ul> </li> </ul>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액화천연가스를 저장 탱크에서 로딩 암으로 전달하는 용도 (이중 배관 구조로 외부충격·누출 방지 및 극저온 상태 유지)</li> </u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액화천연가스를 저장 탱크에서 로딩 암으로 전달하는 용도 (이중 배관 구조로 외부충격·누출 방지 및 극저온 상태 유지)</li> </ul>
완제품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306.90.5000</li> </ul>

#### 제조공정



01

이탈리아산, 독일산  
재료 프랑스로 운송



02

가공 공정 수행



03

포장



04

미국 수출

#### 상세공정

- 이탈리아산 또는 독일산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와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패널, 스테인리스강 시트, 보호캡 등을 프랑스로 운송

## 2. 프랑스 내 공정

-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 절단 및 끝부분 베벨 가공
-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샌드블라스트 처리, 절단 및 베벨 가공
-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에 단열재를 감싸고 스테인리스강 시트를 이용해 고정
-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에 백킹 링 용접
-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를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안에 삽입
-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에 용접 보호 캡 임시 고정
- PIP 어셈블리 완성

## 3. PIP 어셈블리 포장 및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이란 가공을 거쳐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제품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물품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유지되는 단순 제조 또는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부품이 다양한 원산지를 가질 경우, 완성품으로 조립되었을 때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하며,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정도, 해당 가공이 구성품에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이 외에도,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 제조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기술 수준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단순 조립 및 기능 보조 수준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 :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판정 결과

- ▣ 프랑스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은 새로운 용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 조립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중량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탈리아산 외부 파이프에 기인하므로 PIP 어셈블리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

## 관련 법령 및 분석

### 기타 의견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되며, 해당 제품(HTSUS 7306.90.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와 함께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

## ③ 시사점

- CBP는 최종 제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중량 기준을 활용하기도 함

##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8989 (2022.10.28.), <https://rulings.cbp.gov/ruling/N32898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김치 소스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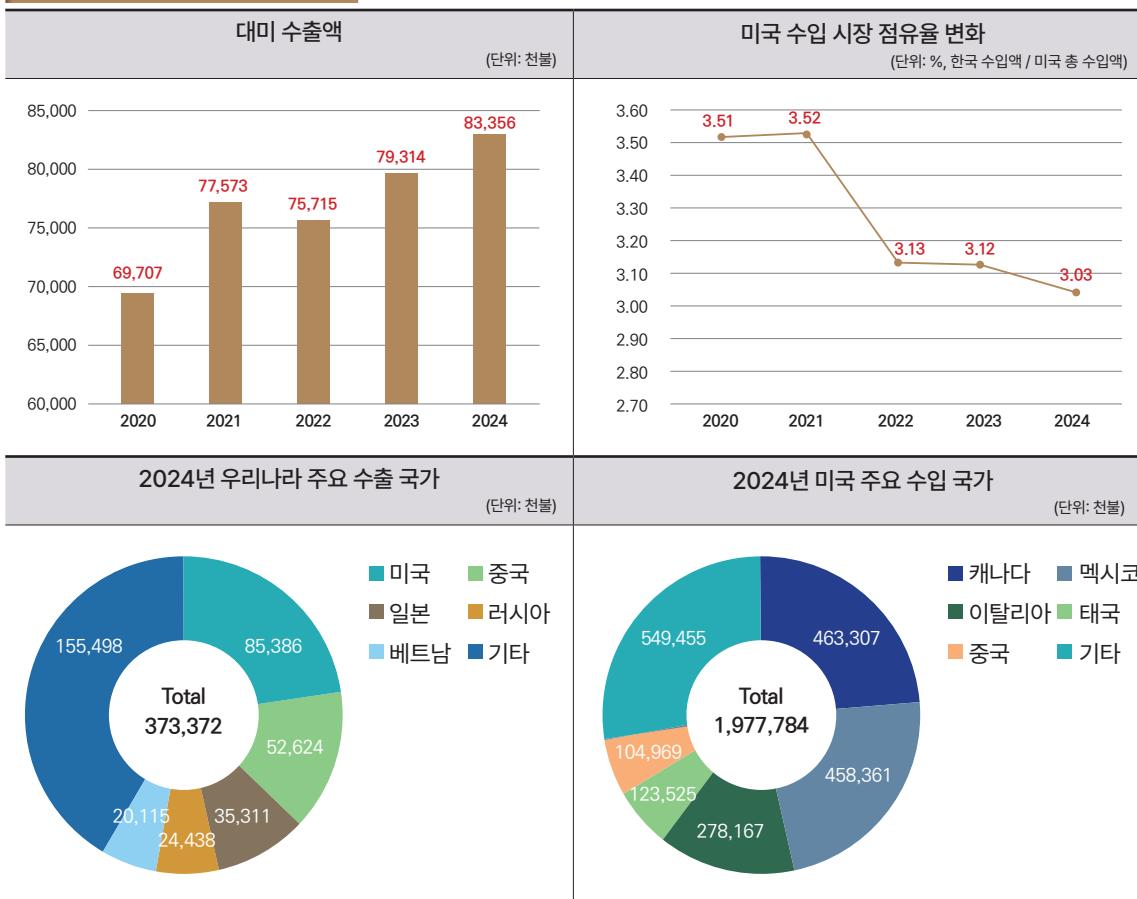
사례명	김치 소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3285 (2023.06.29.)
사실관계	여러 국가의 원재료를 일본으로 수입하여 혼합, 조미, 금속 이물질 제거,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김치 소스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사전 배합된 원재료들을 혼합하여 최종 소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개별 원재료들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김치 소스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하므로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함</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2103.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7.5% or 30.5¢/kg + 6.4%
	한-미 FTA 협정세율	0~3%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103.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② 판정사례

### 사례명 [김치 소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3285 (2023.06.29.)

#### 사실관계

요청자 Wismettac Asian Foods, Inc.

제품	제품명	• 김치 소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수돗물, 고과당 액상당, 소금, 사과 펄프, 균류 식초, 굴 펄프, 가다랑어 추출물, 오징어 추출물, 구연산, 다시마, 파프리카 색소</li> <li>중국: 마늘, 발효 채소, 고추, 생강</li> <li>브라질: L-글루타민산나트륨, 양조식초</li> <li>스페인: 파프리카</li> <li>미국: 가수분해 대두단백, 잔탄검</li> <li>인도네시아: 가다랑어포</li> <li>태국: 5-이노신산나트륨</li> </ul>
	용도	• 식품 서비스 업계 대상 판매용
	완제품 HTSUS	• 2103.90.9091

#### 제조공정



- 상세공정
- 여러 국가의 물품을 일본으로 수입
  - 일본에서 원료 혼합 및 조미
  - 금속 이물질 제거
  - 1,200g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 밀봉, 라벨 부착, 포장
  -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판정 결과

- 사전 배합된 원재료들을 혼합하여 최종 소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개별 원재료들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김치 소스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하므로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함

##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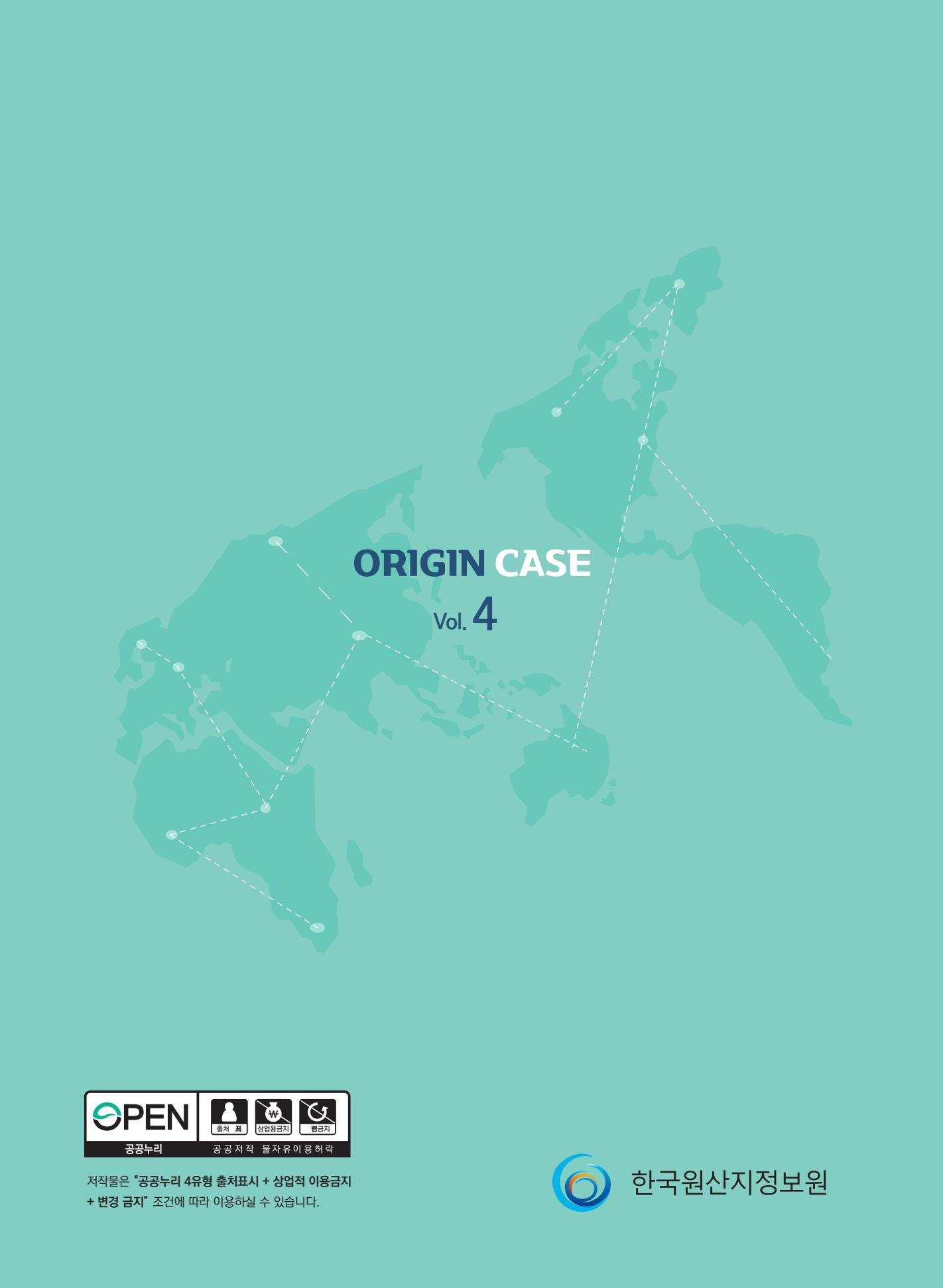
-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 I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3285 (2023.06.29.), <https://rulings.cbp.gov/ruling/N33328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 ORIGIN CASE

## Vol. 4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